

2022년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5. 30.(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이성엽, 송수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9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12건(안건번호 제2022-46610호~4772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46610호~46633호(순번 1번~24번)은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46634호~46672호(순번 25번~63번)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불법복제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안건번호 제2022-46673호~47721호(순번 64번~1112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428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9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 관련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내용은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는 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1호 안전 회의록은 비식별 처리 후 원안대로 공개하고, 제2호 안전 회의록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2-101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4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532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모두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2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 등의 쇼핑 포털에서 ‘◆◆ ◆◆◆’ 또는 ‘▽▽▽▽▽’, ‘◆ ◆◆◆◆’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총 54개 게시물임. 금번 심의에서는 셋톱박스 형태 외에 태블릿 형태의 스트리밍 기기가 새로이 심의요청되었음.

(태블릿 형태 스트리밍 기기를 통해 을 통한 불법복제물을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며)TV가 필요한 셋톱박스과 달리, 전용 태블릿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감상할 수 있음. 실시간 방송 및 VOD 형태를 모두 제공하고 있음.

본건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즉 본건 기기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게시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본건 기기를 판매하여 본건 기기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이므로, 게시자의 본건 기기 판매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의대상 게시물에 의한 본건 기기 판매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침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직접 복제·전송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방조를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할 수 있는지 문제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기기 판매행위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임이 인정됨. 심의대상 게시

물은 본건 기기 판매행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종합하면,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부터 24번까지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구함.

- A 위원: 태블릿 자체를 판매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B 위원: 전 세계 방송이 다 나오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다른 나라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VOD도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사용하다가 서버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김. 어느 정도 판매되었다 싶으면 시간이 지나서 서버를 닫아서 사용을 못 하게

함. 기기 가격에 5년치 정도 구독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됨.

- A 위원: 이후 서버를 옮겨 새로이 판매하는 식임.
- B 위원: 수입할 때는 관세청을 통해서 수입되는 거 아닌지? 심의를 통한 판매글 삭제로는 일일이 다 규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기기가 수입될 당시에는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세관에서 막기 어려움.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A 위원: 판매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임.
- B 위원: 전 세계 방송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면 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음.
- C 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써보면 신호가 많이 끊겨서 원활하게 볼 수가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그러면 순번 1번 내지 24번에 대해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지?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24번은 원안대로 시

정권고 가결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다음은 순번 25번 내지 6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불법복제물 총 50건임. 순번 25번 내지 48번은 영화를, 순번 49번 내지 63번은 만화를 각각 제공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25번부터 63번까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말씀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5번 내지 63번은 원안대로 시정권고 가결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다음은 순번 64번부터 순번 1112번까지 총 2,428건의 모니터링 안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4번은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임. 2시간 11분의 영화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국내 VOD 서비스에서 5,500원에 이용할 수 있음.

(영화 '모비우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4번은 올해 3월에 개봉한 영화 '모비우스'임. 1시간 43분의 영화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국내 VOD 서비스에서 6,9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음.

(방송 '스파이 패밀리'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96번은 웹하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임. 국내 방송사에서 방영하고 있는 작품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현재 OTT 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함.

(만화 '스파이 패밀리'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47번은 일본 만화 '스파이 패밀리'를 웹하드에서 50개시에 판매중인 사안임. 1화부터 62화 전체를 그림 파일로 판매하고 있음.

해당 4건을 포함하여 순번 64번부터 순번 1112번까지 총 2,428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4번~1112번 중 이미 삭제 또

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46610호~46672호(순번 1번~63번)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로 가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2-46673호~47721호(순번 64번~111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6. 13.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